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,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반영으로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온기창고 '다채로운' 프로젝트 사업,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사업 등 기금 사업 도입으로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4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598백만원에서 565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하였고, '24년 최종 모금액 및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50백만원을 반영하여 기부금 수입 목표를 33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.
- 나.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신설하고, 사무관리비에 기금사업비를 반영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'정책사업' 금액이 기존 142백만원에서 32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32.1% 변경되었고, 예치금 금액이 827백만원에서 582백만원으로 245백만원 감소하였음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

[수입계획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
세외수입	381,490	355,591	△25,899	△6.8%
경상적세외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이자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공공예금이자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임시적 세외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기부금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기부금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보전수입등내부거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보전수입등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예치금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예치금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
[지출계획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
효율적 재정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고향사랑기부제 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고향사랑기부제 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사무관리비 ○ 홍보비 등 33,000 ○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95,000	33,000	128,000	95,000	287.9%
기타보상금	108,900	101,321	△7,579	△7.0%
민간위탁금 ○ 온기창고'다채로움'프로젝트 100,000	-	100,000	100,000	신설
재무활동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보전지출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여유자금 예치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일반예치금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행정운영경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기본경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기금관리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사무관리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현선 (☎ 2133-6876)